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47호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및 다른 나라와의 상호 문화 증진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나 통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 등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지방자치단체,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cmdjyou@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 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실태조사)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자치구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학술·연구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

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②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2.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실태
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현황
4. 국제문화교류의 국제적 동향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 번	발 의 의 원	서 명	비 고
1	권 중 순		
2	윤 종 명		
3	권 태 권		
4	홍 종 원		
5	채 계 순		
6	우 애 자		
7	김 인 식		
8			
9			
10			
11			
12			
13			
14			
15			